

#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75조 소액부징수



### 제74조 · 제75조의 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
-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서 자기보유분 세액을 거래가액에서 차감하며, 채권매도자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로 하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함.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부징수(원천징수 안함)

### ●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①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 제75조

#### 【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 제98조,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 I.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1. 본 조의 개요

소득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귀속받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매도시 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을 중도양도한 법인 자신이 거래정산하면서 해당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선납원천세액으로 공제한다.

###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74조제1항)

#### ① 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소득수취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여기에 선이자지급방식으로 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도 이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여기서 교부해야 할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자 보고용, 발행자 보관용 및 소득자 보관용의 3매가 작성·교부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②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분 이자금액의 세액거래정산 (법 제74조제2항)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분 이자상당금액은 채권

거래가액에 순액차감되어 거래정산된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매도자 자신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거래정수정산된다. 그러니까 자기자신의 채권액면가의 보유기간이자소득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거래정산 후 연말결산시 선납세액으로 대응공제한다. 이밖에 어음·증권·채권 등의 할인매출시 선이자지급방식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기간분 이자세액을 계산한다.

### ③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및 비치

원천징수의무자는 발행자 보고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소득을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원천징수할 소득으로 본 법 제120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및 교부 제출한 것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지급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를 비치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3. 원천징수 과오납의 원금방법

### ① 원천징수세 과오납금의 환급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동 금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 II. 소액부징수 (법 제75조)

본 법 제75조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소득이 있다 하여도 크기가 낮아 징세비용보다 징세효과가 적어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86조 규정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및 중간예납세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